

이민, 식민, 난민*

— 식민지기 재만조선인 농민과 ‘세계 안의 자리’

윤영실**

[초 록]

이 글은 식민지기 재만조선인을 조선민족의 일부나 일본제국의 식민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해석들을 넘어 관국민적(transnational) 이동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이주민족으로서의 특이성에 주목했다. 2장에서는 현대 정치철학의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체제와 관련하여 이민, 식민, 난민의 의미를 고찰하고, ‘세계 안의 자리’(place in the world)가 지닌 다층적인 함의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에 삽입된 구한말 조선인 월경민의 편지와 박은식의 『몽배금태조』에 나타난 대중교의 민족 상상을 중심으로, 현실의 국가들(states)과 거기에 내속된 국민들(nations)이 아니라 세계 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월경(越境)하는 기민(飢民, 棄民)들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2067774).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조교수

주제어: 만주, 이민, 식민, 난민, 「몽배금태조」, 재만조선인, 안수길, 「벼」, 리튼보고서
Immigrant, Colonizer, Refugee, Colonial Koreans in Manchuria, Su-gil An,
Lytton Report

국민의 경계와 경합했던 다양한 민족 상상들을 상기하고자 했다. 4장에서는 『리튼보고서』와 안수길의 소설 「벼」의 겹쳐읽기를 통해 ‘만보 산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만조선인들의 삶의 조건과 권리들이 법과 제도, 국가간 조약에 따라 상이하게 분절되면서 이민자나 식민자가 아닌 난민에 가까워졌음을 분석했다. 일본제국이 재만조선인의 난민화를 야기한 주된 요인인 동시에 이들의 ‘보호’를 자처하는 유일한 국가 권력이라는 역설 속에서, 자치와 안전에 대한 재만조선인의 열망은 만주국 수립의 논리로 재전유되었다. 역사의 이 아이러니한 과정을 재만조선인의 이데올로기(제국의식)나 도덕(친일 내지 협력)의 층위에서가 아니라, 국민국가들의 법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이주민족이 처한 정치적 아포리아로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적 의의를 갖는 과제일 것이다.

1. 서론

식민지기 ‘만주서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 시발점은 이른바 「『농군』 논쟁」¹⁾을 촉발시킨 탈민족주의적 해석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소박한 친일/반일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식민지 조선인이나 재만조선인들의 만주 서사에 투영된 유사제국주의를 신랄하게 폭로했다.²⁾ 그러나 절박한 생존의 경계 위에 서있던 재만조선인들의 삶을 ‘제국의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획일화된 민족주의적 해석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

1) 「『농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해석 논쟁에 대해서는 하재연(2008), 「『신체제』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연구회, pp. 283-310 참조.

2) 김철(2002),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 상허학회, pp. 123-159; 이경훈(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 한국근대문학회, pp. 92-119; 정중현(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 229-259.

었다. 이후 만주서사에 대한 해석은 탈식민주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피식민자의 제국주의에 나타나는 균열이나 양가성³⁾을 좀더 섬세하게 읽어내려는 노력들로 이어져왔다. 한편 ‘저항’과 ‘협력’ 구도 역시 협소한 민족주의 관점을 극복하며 분기해왔다. 작가적 윤리의 근소한 차이들을 분별하면서 비민족주의적 저항에 주목하거나, 재만조선인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그것이다.⁴⁾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위에서 재만조선인의 이주민족으로서의 특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단일하거나 균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때그때의 정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들은 때로 이민자로, 때로는 식민자로, 때로는 국민이나 난민으로 규정되었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제국과 식민지 민족 사이에 놓인 재만조선인 문제를 이들에 대한 표상, 이념, 정체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이민, 식민, 난민, 국민이라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지위의 변화들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우선, 한국 문학 연구가 흔히 분석의 층위로 삼아왔던 이념, 의식, 관념, 도덕 같은 것들이, 재만조선인 농민이라는 하위주체의 삶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시야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학적 ‘재현’에서 작가 ‘의식’을 추출하는 방식의 연구는 흔히 작가라는 개인 주체의 도덕적, 이념적 성취나 한계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는데, 이는 정작 재현

3) 서은주(2010),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 현경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pp. 231-263.

4) 한수영(2006), 「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의 문제,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이선미(2005), 「만주 체험과 만주 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 15; 송명희(2010), 「암흑기 재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김재용(2011),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 12; 한홍화(2012), 「작가의 공간의식과 만주의 의미 — 이태준의 『농군』과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

된 타자인 하위주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의 주체인 작가의 의식을 마치 재현대상인 하위주체의 의식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오류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하위주체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의식’이라기보다, 그들을 둘러싼 물질적, 제도적 조건들이다. 1930년대 중후반 만주의 집단부락에서 살아가던 조선 출신 농민이 민족의식, 제국의식, 디아스포라 의식 중 어떤 관념에 지배받는지와 별개로, 그/그녀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식 외부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었다.⁵⁾ 따라서 재만조선인 농민이 제국의 식민자인지, 국민인지, 난민인지를 둘러싼 분분한 평가는, 그의 의식에 준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조건 짓는 법적, 제도적 규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재만조선인이라는 ‘이주민족’ 내부의 관점을 좀 더 철저하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다. 만주를 국가들의 ‘경계지대’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설정은 꾸준히 이어져왔고, 국가나 국민들 ‘사이’에 놓인 재만조선인의 디아스포라 경험에 주목했던 연구들도 있었다.⁶⁾ 그러나 분석의 각론까지 이런 문제의식을 밀고나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국가들의 사이에 놓인 ‘이주민족’의 경험을 언어로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일본 제국 신민, 중화민국 국민, 식민지 조선 민족이라는 현실적 범주들에 쉽게 이끌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주민족은 네이션의 동일성을 균열시키고, 네이션 간의 경계를 횡단함으로써만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적 정체성이다. 이주민족은 본래 ‘장소’로부터의 뿌리 뽑힘과 이동(‘移’),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머물기(‘住’) 위한 집

5) 윤영실(2017), 「자치와 난민 — 일제 시기 만주기행문을 통해 본 재만조선인 농민, 『한국문화』 78, 2017. 6, p. 91.

6) 한수영, 위의 글; 한석정 외(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임성모 외(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재용 외(2014),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소명출판 등.

단적 분투라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주민족은 떠나 온 곳과 새롭게 머무는 곳의 네이션들(예컨대, 식민지 조선민, 일본인, 혹은 중국인)에 단순한 부분집합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민족은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를 넘는 이동 속에서 네이션들 간의 내적 경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동요시킨다.

무엇보다 네이션에의 소속이 정치적 시민권은 물론 사회적 기본권의 향유 자격까지 결정짓는 근대 세계에서, 이주민족이 새로운 삶의 장소에 머물기 위한 분투는 권리와 자격들의 분배를 구획하는 기존의 ‘통치’ 질서에 도전한다. 예컨대, 재만조선인들은 1920년대 이래 점차 만주를 그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로 긍정하고, 현실의 ‘통치’ 질서와 길항하거나 협상하면서 ‘정치’적 주체화를 도모했다. 그것은 때로 국가들 바깥의 ‘자치’ 운동으로, 때로는 ‘입적 귀화’를 통한 중국 국민-되기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때로는 공민권 획득을 통한 만주국 국민-되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서 분할과 대립의 선은 어떤 선형적 기준으로 구획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사이만이 아니라,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과 이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했던 국가들(구한말 한국, 일본제국, 중화민국, 만주국 등) 사이에 놓여있었다. 생존의 장소와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 떠돌고 정착하는 이주민들. 이들을 삶의 장소로부터 뿌리 뽑아 뿔뿔이 흩어놓는(‘離散’) 동시에, 이들의 흐름을 봉쇄하거나 절단하고 특정한 ‘국민화’의 회로 속에 고착시키려는 국가들의 통치권력. 재만조선인을 이주자 내부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을 바로 이 두 항(이주민과 국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한국문학 연구의 논의들이 반복적으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라는 선형적 경계들 안으로 재함몰되는 경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만조선인 문제를 당대의 좀 더 넓은 세계사적 맥락 안에서 재조명하기 위해서이다. 재만조선인이 처한 난민적 상황은 실상 전

간기(戰間期)의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했다. 한나 아렌트는 특히 중동부 유럽에서 분출했던 난민 현상에 주목하여,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성찰한 바 있다. 그녀의 사유는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전지구적 이주자 문제나 난민 사태에 힘입어 활발하게 재조명되고 있으며, 국민국가 질서를 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모색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만조선인을 둘러싼 이민, 난민, 국민화의 쟁점들은 세계사적인 동시에 현재적이다. 이는 재만조선인 문제를 좁은 의미의 한국 민족주의는 물론이요, 제국과 식민지라는 이항관계마저 넘어, 국가들과 인민 사이의 좀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통해 재고해야 함을 뜻한다. 제국과 식민지라는 이항관계로 사태를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제국에 대한 ‘협력’ 여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나아가 재만조선인의 생존 문제는 제국에 대한 협력을 정당화하는 수사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생긴다. 만주사변 이후 재만조선인이 일본 제국 통치 안으로 회귀하고, 중국 입적론에서 만주국 공민권 획득론으로 전환한 과정은 제국에 대한 협력이라는 완고한 도덕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간기의 세계사적 현상인 ‘난민’이라는 프리즘으로 재만조선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들의 생존 담론이 지닌 현실적 무게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국가들의 폭력과 국가들 사이에 놓인 재만조선인의 실상 역시 이런 프리즘을 통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재만조선인의 이주민족으로서의 특이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론으로서 이 글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몇 가지 텍스트들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현대 정치철학의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체제와 관련하여 이민, 식민, 난민의 의미를 고찰하고, ‘세계 안의 자리’(place in the world)가 지닌 다층적인 함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청말 외교문서인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에 삽입된 구한말 조선인 월경민의 편지와 박은식의 『몽배금태조』에 나타

난 대종교의 민족(네이션) 상상을 중심으로, 국민국가체제가 완비되기 이전 만주라는 변경을 향해갔던 이들의 ‘월경’과 ‘망명’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현실의 국가들(states)과 거기에 내속된 국민들(nations)이 아니라 이런 경계들을 가로질러 세계 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민(飢民, 棄民)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라는 오늘날의 국민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민족 상상들이 경합하고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만주사변후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리튼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와 안수길의 소설 「벼」에 기록/재현된 ‘만보산사건’을 겹쳐 읽음으로써, 재만조선인들의 삶의 조건과 권리들이 법과 제도,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상이하게 분절되었음을 규명하고, 이들이 이민자나 식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전락해갔던 양상을 분석한다.

2. 이민, 식민, 난민과 ‘세계 안의 자리’(place in the world)

재만조선인 문제를 사유할 때, 이민과 식민, 난민의 사전적 정의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각각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근대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으로 엄밀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근대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이민’(immigration)은 국민국가들 간에 협약된 제도적 절차에 따라, 개인의 거주와 국적(nationality)을 하나의 국민국가로부터 다른 국민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다. ‘식민’(colonization)을 규정하는 것은 훨씬 까다로운 문제여서, 아직까지 식민화의 여러 유형들을 포괄할 만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찾기 어렵다.⁷⁾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7) 지난 한 세대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의 이론적 흐름은, 문화 및 담론 연구로 편향되고 탈서구중심주의 및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민국가(nation-state) 시스템, 식민주의적 인종담론이라는 3항에 근거해 ‘식민’을 규정할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따른 국민국가의 팽창으로 새롭게 획득된 영토인 식민지, 법적, 제도적으로 ‘국민’(nation)의 자격과 권리들이 박탈되거나 차등적으로만 부여된 식민지 원주민(피식민자), 이러한 차별을 뒷받침하는 인종적, 민족적 위계에 대한 담론들이라는 삼위일체가 근대의 식민주의를 규정한다.

근대 식민지는 자원 조달, 시장 확보,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자본

탈민족주의적 의제와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역설적으로 근대 식민주의(colonialism)의 규정과 정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제시한 ‘식민’의 규정은 어떤 이론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합하는 이론들 중 필자가 취할 방향성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류가 비판의 초점을 맞춰왔던 문화와 담론상의 서구중심주의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불균등성, 포함/배제를 통해 작동하는 국민국가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통치 질서, 이 두 체제의 특수한 역사적 결합 형태로서의 식민주의적 지배 및 그 담론적 상관물인 인종주의라는 더 넓은 맥락 위에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상론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이론적 참조점만 밝혀두고자 한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문화주의적 경향과 서벌턴 연구그룹의 탈서구중심주의 기획의 한계를 비판하며 식민주의를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Vivek Chibber (2013), *Postcolonial Theory and the Specter of Capital*, London: Verso. 국민국가의 포괄적 배제와 법적 예외상태로서 식민통치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Marcelo Svirsky and Simone Bignall (2012), *Agamben and Colonialism*,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Nasser Hussain (2003), *The Jurisprudence of Emergency: Colonialism and the Rule of Law*,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현대 인종주의를 식민주의의 유산 및 국민국가의 모순과 연결하여 분석한 논저로는 에티엔 발리바르(2010),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본고는 일본제국의 조선 통치 역시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적 의미에서든 (지구사에서 유례없는 ‘야만적’ 지배) 긍정적 의미에서든 (서구의 비서구 인종에 대한 수탈과 폭압과는 다른 합리적, 법적, 국민국가적 통치) 식민주의 일반과는 다른 것으로 규정하려는 입장들과 거리를 둔다. 예컨대, 고마고메 다케시가 제국일본의 경험에 기반하여 도출한 식민지의 규정들인 이법역(異法域), 피식민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의 제약 같은 요소들은 서구 제국들의 식민통치에서도 폭넓게 나타나는 ‘식민지적 예외상태’(colonial state of exception)로 설명될 수 있다. 駒込武(2018), 「植民地主義」, 『日本植民地研究の論點』(日本植民地研究會 編, 岩波書店: 東京.

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획득된 영토로서, 일회적 침략이나 약탈이 아닌, 식민모국과의 지속적인 통치 관계 아래 놓인다. 국민국가화된 근대 제국들은 내적으로 봉건적 위계에 따른 권리들의 차등적 분배를 혁파하고 시민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식민지 원주민을 식민모국의 국적(nationality)에 포함시키되 국민(nation)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에게 귀속된 제반 권리들을 박탈하거나 제약한다. 예컨대,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 제국 외부에 대해서 국적상 ‘일본인’이지만 제국 내부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었고, 모든 식민지적 차별은 이 포괄적 배제에 근거한다. 한편, 권리들의 평등한 분배라는 국민국가의 이념은 근대의 국민-제국들이 그토록 방대한 식민 담론을 생산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근대적 제국의 지배가 위계적 신분질서나 이종족에 대한 물리적 억압으로 뒷받침되었다면, 근대의 식민 담론은 피식민자의 권리 제약이 ‘문명’에 미달한 그들 자신의 결여 때문임을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했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의 학지(學知) 속에서 피식민자 일반은 비로소 하나의 ‘종족’, ‘인종’, 혹은 ‘민족’으로 분류되고 범주화되며, 열등함을 고유한 자질로 갖는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발명된다. 동인종 내에서 식민지배 관계를 구축했던 일본 제국에서는 ‘인종’보다는 ‘민족’이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분절하는 특권적 범주로 부각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과 ‘조선인’을 단위로 삼는 민족학적 지식이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아닌 일본 제국에 의해 더 먼저,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피식민자 자신의 민족학은 제국보다 한발 늦게 시작되며, 필연적으로 제국의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이 된다. 그것은 피식민 ‘민족-people’⁸⁾에 결부되었던 열등함의 함의를 뒤집어 스스로를

8) People과 nation을 ‘민족’과 ‘국민’ 중 어느 쪽으로 번역할 것인가는 오랜 난제다. 각각의 개념들에 착종된 역사적 격변, 정치적 쟁투, 해석의 갈등들을 고려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개념들을 일대 일로 대응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어의 개념

국가 수립의 자격을 갖춘 ‘민족-nation’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한다. 피식민 ‘민족’이 스스로를 ‘네이션’(nation)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활(死活)을 건 싸움이다. 식민담론의 논리상, 피식민 민족은 문명의 타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절멸되거나, 문명에 동화됨으로써 문화적으로 절멸되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놓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홋카이도 아이누의 경우가 전자에 근접했다면, 극단적인 동화정책을 수반한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 ‘국민화’는 후자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植民’과 ‘殖民’이라는 상이한 표기가 함의하는 차이란, 식민화의 두 가지 방향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⁹⁾ ‘植民’이 식민자의 이식(移植)을 위한 원주민 피식민자의 생물학적 절멸이라는 전자의 방향성을 가리킨다면, ‘殖民’은 피식민자의 문화화=문화적 동화와 자본주의적 식산(殖産)이라는 후자의 방향성을 지시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식민지 지배는 동일화/차이화의 적절한 안배와 시간적 완급 조절을 통해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머무른다. 식민지 원주민을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절멸되지도, 문화적으로 철저히 동화되지도 않는 사이에 머물게 하는 것, 그들을 식민자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차이’에 결부시

사적 맥락에서 ‘민족’은 처음에 문화적, 종족적 정체성을 띤 ‘people’의 번역어로 쓰이다가 국망과 3·1 운동을 거치면서 정치적 자결의 자격을 지닌 nation의 번역어로 전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윤영실(2019), 「헨리 휘튼과 J.C.블룬칠리의 네이션 개념과 마틴의 번역서 『만국공법』 『공법회통』 — 국제법과 식민주의적 폭력, 네이션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9.

- 9) 오늘날에는 ‘植民’이 일반화된 표기로 자리 잡았지만, 일본 제국의 법적, 공적 영역에서는 ‘민을 심는다’는 뜻에서의 ‘植民’보다 ‘민을 증가시킨다’는 뜻의 ‘殖民’과 이로부터 비롯된 ‘拓殖’이라는 단어가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를 식민지배가 아닌 ‘합병’으로, 조선을 식민지가 아닌 ‘外地’로 호명했던 것과 더불어 ‘植民’보다는 ‘拓殖’을 선호했던 언어적 용법에는,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 분할과 폭력”을 은폐하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황호덕(2011), 『벌레와 제국』, 새물결, pp. 58-59. 일본에서 ‘殖民’이라는 단어가 번역 신조어로 성립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新渡戸稲造(1943),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論文集(矢内原忠雄 編), 東京: 岩波書店, pp. 40-41.

김으로써 ‘문명’과 권리상의 평등을 향해가는 영원한 도정(道程)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열등한 것으로 ‘포섭된 차이’야말로 특별 잉여가치의 착취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가시화하는 것이 ‘민족’별 임금 차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이 적게는 1.5배에서 2배 이상 벌어졌다는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식민화가 인종/민족 간의 차별적 가치체계를 통해 구조적 착취를 수행하는 지배 방식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처럼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이란 진공 속의 허구적 상상이 아니라, 차별적 권리들의 문턱이자, 자본주의적 불균등성의 결절점이자, 지식-권력의 담론적 구성물이었다.

그렇다면 ‘난민’이란 무엇일까. 1951년에 제정된 제네바 난민 협약(The Geneva Convention on Refugees)은 난민이란 자기 나라를 벗어나 있으며, 인종, 종교, 민족체(nationality),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난민들’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의 자격’ 사이에는 큰 낙차가 존재한다. 일단 난민의 자격이 부여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권리들을 부여해야 하므로, 국민국가들은 까다로운 법적 규정과 제도적 절차로 난민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난민의 자격’이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현실의 난민이란 애초에 (국가의 폭력적인 권력행사에 의해서든, 무력한 기능 부전에 의해서든) 국가라는 ‘안전’망에 속할 자격을 박탈당한 자인데, 이제 난민조차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으로서 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식적, 비공식적 난민을 뭉뚱그려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persons)으로 부르는 경향이 증대하는 것은, 법적 난민과 난민의 현실 사이의 이런 낙차 때문이다.

2차대전기 독일의 유대인으로서 박해와 망명을 경험했던 한나 아렌트는, 난민 문제의 곤궁을 인권의 역설로 정식화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은 인권을 만인의 보편적 권리로 선포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네이션의 주권(national sovereignty) 아래 귀속시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¹⁰⁾ 주권이 네이션에 귀속되고, 특정 네이션이 국가(스테이트)를 독점하는 근대의 국민국가 체제는 개개인들이 특정 네이션(국민)에 귀속됨으로써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구비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국가를 독점하려는 종족들 내지 민족들 간의 쟁투가 격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네이션에서 배제됨으로써 온갖 박해에 내몰린 소수종족(minorities)과 국가 없는 족속들(stateless peoples)이 발생했다. 인권이 “오로지 네이션의 권리로서만 실행되고 보호”¹¹⁾되면서, 인권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에서 무력한 관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날 아렌트의 사유는 국민국가, 난민, 인권, 민주주의를 재사유하는 유럽의 비판적 정치철학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지만, 그녀가 다루는 유럽의 문제들은 비유럽의 식민지 경험과 동시대의 현상들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 중 하나는 아렌트가 유럽의 국가 없는 족속들과 소수종족의 권리 상태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전간기 유럽에서 국가 없는 족속(유대인, 집시)은 ‘세계 안에서 자리’(a place in the world)를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거주권마저 박탈당한 채 ‘지구의 쓰레기’처럼 치워져야 했으며, 수용소만이 이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장소/무장소이었다. 반면 러

10) 프랑스 인권선언의 정식 명칭은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인간의 자연권을 선포한 1조와 주권의 소재를 네이션에 둔 3조이다. Article I -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Social distinctions can be founded only on the common good. Article III - The principle of any sovereignty resides essentially in the Nation. No body, no individual can exert authority which does not emanate expressly from it.

11) Arendt, Hannah (1976),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N.Y.: A Harvest Book. pp. 290-304.

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구제국들이나 전간기 유럽의 신생독립국들에서, 소수종족들은 많은 권리를 박탈당했지만, 최소한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언제든 거주국의 국적을 박탈(denationalization) 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연맹의 ‘소수종족 조약’(Minority Treaties) 같은 “예외의 법”(law of exception) 아래에서 최소한의 권리들을 보전하고 있었다.

아렌트의 구분에서 법적 지위나 권리상 피식민자와 더 유사한 쪽은 소수종족이다. (비유럽의) 피식민자와 (유럽의) 소수종족은 국적(nationality)을 지니지만, 국민(Nation)에서 배제됨으로써 권리들을 제약 당했다. 그들은 최소한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지니지만, 오로지 잠정적으로만, 대개 국가나 자본이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하다. 그들은 헌법과 의회가 제정한 법이 아닌 법령 통치, 혹은 어떤 ‘예외의 법’ 아래 놓인다. 논리상 피식민자의 평등한 권리가 오로지 제국 문명에 동화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제연맹의 소수종족 보호 조약이란 소수종족들을 국가의 주족(state-people)에 동화(assimilation)시킴으로써 해소(liquidation)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이 유사성에 주목했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몇몇 신생독립국들이 자국 내의 소수종족들에게 “무자비하게 피식민 민족(colonial peoples)의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 문제에 식민주의적 방법(colonial methods)을 도입”했다고. 물론 전간기에 국제연맹이 지정한 유럽의 ‘공식’ 소수종족과 비유럽의 피식민 민족 간에는 큰 차이도 있다. 전자가 거주국에서 국적을 박탈당할 경우 송환될 본국이 있었다면, 후자는 곧바로 세계 안에서 자리(place in the world)를 갖지 못한 자, 생존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자, 곧 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최근에는 아렌트가 언급한 ‘세계 안의 자리’가 갖는 함의를 좀 더 확장시킴으로써 난민, 이주자, 소수종족 등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권리문제를 사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합법적

으로 거주할 장소, 곧 ‘거주권’(a place of lawful residence)을 갖는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국민국가들의 국제법적 질서 속에서 그것은 국적(nationality)을 갖는다는 의미이자, 국민적 소속과 연동되는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이 제반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 이 ‘세계 안에 존재할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¹²⁾ 이처럼 다층적인 권리들이 국민국가 체제의 통치 질서에 긴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안의 자리’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 모든 권리들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급진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간략하나마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시각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민’, ‘식민’, ‘난민’은 모두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전제로 하지만, 국가들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동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렇게 국가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과 흐름을 폭넓은 의미에서 ‘이주’라고 명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지만, 이주를 둘러싼 권력의 작동과 법적 형식이 달라짐으로써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권리의 배분도 달라진다. 국가 권력과 법의 시선이 아니라 이주민의 시선을 취할 때 이 점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재만조선인이 처했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불과 반세기에 걸친 정치적 격변은, 재만조선인의 의지나 관념과 무관하게 그들의 국적과 사회적 지위, 그로부터 비롯되는 권리들의 수준,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사 자체를 결정했다. 재만조선인 농민을 ‘제국의 농군’(식민자)으로 규정하는 논리는 오로지 제국 자신의 시선을 취할 때만 타당하다. 국가들과 민족들의 복합적인 그물망 속에서 재만조선인을 파악하되, 재만조선인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사태는 썩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국가들로부터 내쳐지고 보호받지 못한 자들, 가난하고 굶

12) Alison Kesby (2012), *The Right to Have Rights*, N.Y.: Oxford Univ. Press. pp. 13-38.

주려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 국가들의 역학 관계에 따라 멋대로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소련인 등으로 호명되었지만 실상 어디 서도 ‘국민’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보지 못한 자들, 국가들 간의 분쟁과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위가 부여되거나 박탈되었지만 결국 그 틈바구니에 끼어 죽음으로 내몰렸던 자들. 그들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는 서사는, 네이션의 역사와도, 내셔널 히스토리의 단순한 폐기와도 다를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네이션(국민) ‘바깥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3. 구한말 기민(飢民, 棄民)들의 ‘월경’과 ‘변경’의 정치적 상상

‘도강’(渡江)으로부터 시작된 간도 조선인의 초기 역사는 전근대적인 의미에서 ‘이주’의 역사였다.¹³⁾ 물론 그때도 범월(犯越)을 금지하는 영토국가의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근대에서처럼 촘촘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근대의 측량술과 지도제작술에 힘입어 명료한 선으로 절단된 ‘국경’이 아닌, 양국의 사이 공간인 ‘변경’이 있었고,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주인 없는 땅이 있었다. 청국의 봉금정책으로 인구가 극히 희소했던 만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변경이었다. 이곳에 청국과 조선 양쪽으로부터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잡거하던 것이 대략 19세기 중반까지의 상황이다. 특히, 조선과 청, 러시아 3국의 영토가 맞닿아 있던 두만강 유역에서 3국 주민들의 교호와 잡거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대개는 기록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이들의 목소리가 뜻밖에도 청국 외교 문서 가운데 발견된다.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의 월경민들이 청국 길림장군

13) 3장은 근대국민국가 체제가 완비되기 이전 ‘범월’의 형태로 이뤄졌던 이주의 양상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2009), 『범월(犯越)과 이산(離散)』, 인하대학교출판부.

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조선민들이 거사말(居沙末) 노야(老爺)께 삼가 글을 올립니다 ... (중략) ... 동국(東國)은 비록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지만 영북(嶺北) 6읍의 백성들은 운수가 불행하여 5, 6년 사이 역병이 빈번했고, 사나운 호랑이가 극성을 부렸으며, 게다가 연달아 큰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목숨을 건지고자 하였습니다. 강을 건너 러시아에 도착하였는데, 땅을 정해주고 식량을 제공해주어 일시나마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역시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기 때문입니다. 대청국(大清國)은 조선에 대해 가까운 이웃의 정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¹⁴⁾

편지를 둘러싼 정황은 이러하다. 1864년 열하 출신의 한족(漢族) 유민 장보태(張保汰)가 러시아인과 함께 혼춘 지역 관지(官地)의 은을 몰래 채굴하려다 붙잡힌다. 붙잡힌 계기는 엉뚱하게도 그가 러시아령에서 마주친 조선인(고려인)들 때문이었다. 러시아령의 조선인들에게 그는 “손 짓 발짓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리 넘어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 당신네 상사(조선관헌, 인용자)가 알 텐데,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소?” 그의 위협에 조선인들은 “두려운 지 모두 짝 소리도 내지 못하”(111)였다. 그러나 얼마 후 러시아인 두 명이 쫓아와 장보태를 러시아 관원에게 끌고 갔고, 장보태는 러시아의 조선인들을 정탐하러 왔다는 혐의로 취조를 받았다. 이후 장보태는 청국으로 인계되어 이상의 정황을 길림 지역 청국 관헌에게 보고한다. 또 장보태의 증언으로 러시아에 월경한 조선인들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 청국 길림장군은 이들의 처리 문제를 청국

14)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타이완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된 청말 외교 관계 문서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외교에 관계된 사료를 주제별로 묶어 출판한 것이다. 김형중, 배우성 외 역(2012),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 동북아시아역사재단, p. 153.

형부(刑部)에 조회했다.

1867년에 이르면 조선인들의 월경이 좀 더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조선, 청, 러시아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간을 위해 궁핍한 조선인들의 월경을 허용하거나 조장했고, 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시하던 청국은 러시아측에 조선인의 본국 송환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조선인 문제에 청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이 요구를 거절했다. 청국이 조선을 통해 러시아에 재차 조선인 송환을 요구하려 했지만, 개항 전인 조선은 러시아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기에 이 역시 무산되었다.¹⁵⁾ 더욱이 러시아는 조선인을 송환하려면 러시아가 그들에게 쓴 비용을 조선이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선인 송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앞으로는 조선이 좀 더 엄격하게 월경민을 단속해야 한다는 정도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조선인 월경민을 둘러싸고 조선, 청, 러시아 사이에 오가던 공문들에는 조공체제와 만국공법 체제의 충돌과 이로 인한 공백이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청이 조공체제 중주국의 자격으로 조선인의 이동을 제약하려 했다면, 러시아는 만국공법 체제에 근거해 청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두 체제 사이의 비법 지대를 활용해 조선인 유이민을 극동 개척을 위한 노동 인력으로 활용했다. 조선은 자국 백성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월경마저 엄금하는, 무능한 봉건 국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공문에서는 조선인 월경민의 궁핍이 자연 재해보다는 국가의 실정

15) 러시아 공사 블란가리가 청국 총리아문에게 보낸 편지. “러시아와 조선이 아직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귀국(청국·청나라)과 맺은 조약 안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저 천하에서 조선 한 나라만이 이웃 국가를 피해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선이 국가인지, 해당 국가에 법과 정령(政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국이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국가에서 재해와 기아 등의 이유로 가족을 데리고 본국으로 와, 경내에서 거주하며 평민처럼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본국에서는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백성들이 이미 러시아에 살고 있고, 러시아의 법률을 준수하므로, 러시아의 보살핌을 받는 데 있어 러시아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책, pp. 363-364.

때문임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징병을 하고 있고, 한 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은 배로 늘어나서 이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도망쳐 살길을 찾는 것입니다.¹⁶⁾

앞서 인용한 편지는 이런 복잡한 정황 속에서 조선의 월경민들이 청국 길림장군에게 보낸 것으로, 조선에서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 러시아에 머물게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비록 국가 권력의 취조와 심문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 공문에 삼입되어 있을 뿐이지만, 두터운 문서들 너머로 희미하지만 끈덕지게 웅얼거리는 월경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 목소리는 국가들에 머물러 있던 독자의 시선을 강탈하여, 국가들의 질서 너머에서, 국가들의 경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가난한 사람들 자신에게 향하도록 한다. ‘살게 내버려두고 죽게 하는’ 봉건국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자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기 때문”에 국가의 금지를 위반하고 경계를 넘어야 했던 자들(越境)의 삶.

국가들의 질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 안에서, 이종족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들은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범망 사이에서, 중국인은 러시아인과 더불어 생계를 도모하고, 러시아인은 월경한 조선인을 숨게 하며, 중국인은 조선인의 아이를 돌본다¹⁷⁾. 반면 청국은 조선 국왕에게 월경을 엄히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조

16) 러시아로 향하던 조선인 남녀 200여 명 중의 한 명이 그들을 쫓던 청국 관헌 查江 恩騎尉 額爾蘇勒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위의 책, pp. 176-177.

17) “동치 5년 10월 25일과 26일, 조선 경원부 관할 아산진 백안촌의 주민 윤재관 등 9명이 전후로 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30일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본 마을에 남아 있던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 우마 등을 전부

선 국왕은 청국에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며, 조선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했던 러시아는 그들을 조선으로 송환하려면 몸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¹⁸⁾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 간, 종족 간의 대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경계를 너머 이동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절하거나 절단하거나 봉쇄하는 국가들, 그 사이의 대립이다.

주로 생존을 위한 월경이었던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20세기 초반 조선의 국망을 맞아 새삼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만주를 향한 정치적 망명은 여전히 근대적 ‘이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대 초기 만주 담론에서 만주는 변방의 종족들이 잡거하고, 마침내 중심을 뒤흔드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융합의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이러한 변경의 상상력은 특히 만주족과 조선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구상했던 대종교의 민족서사에 강한 흔적을 남겼다. 대종교 2대 교주인 김교헌은 『신단실기』(1914)에서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등 만주 일대의 제 종족을 단군이라는 공통 시조에서 분화된 배달민족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단민사』(1923)에서는 고려와 요, 고려와 금, 조선과 청의 역사를 남북국의 역사로 병렬하여 기술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교오대종지서』의 「대황조신손원류지도」(1909)에서부터 발견되는 확장된 민족론은 1910-1920년대 이상룡, 김정규, 유인식, 이원태, 황의돈 등의 사서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⁹⁾

가져갔고, 마을사람 김응철 등 6명도 온 집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위의 책, p. 177.

- 18) 러시아의 계무관(界務官)은 청국의 국경 초소 관현인 상태(祥太)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러시아에 끌어들이는 조선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수분(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책, p. 317.
- 19) 한영우(1994), 「1910년대 이상룡, 김교헌의 민족주의 역사서술」,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도면희(2015), 「독립운동 계열의 한국사 구성체계 — 대종교계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사림』 53, 수선사학회, pp. 1-31.

한민족(조선족)과 만주족을 동일한 민족으로 묶는 견해는 조선시대의 만주 인식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생각”²⁰⁾이었다고 평가된다. 만주에 대한 고토의식은 이미 17세기부터 싹트고 있었지만, 이는 병자호란 이후 청이나 만주족을 이적으로 배제하는 소중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만주족-조선족을 동일민족으로 보는 대중교의 민족의식과는 전혀 궤를 달리 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의식을 배태한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동아시아 각국에 근대적 네이션 개념이 국민이나 민족 개념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한중일 어느 곳에서나 네이션의 경계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경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혼합민족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²¹⁾ 중국의 ‘대민족주의’와 ‘소민족주의’의 대립,²²⁾ 구한말 한일을 묶는 ‘동양민족’론 등은 모두 당시에 경합하던 민족론들의 여러 판본이었다. 일본이나 한족을 제외한 채 유독 조선인과 만주인을 하나로 묶는 민족 상상 역시 그런 다양한 민족론들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대중교의 확장된 민족서사는 단순히 혈통적 계보라는 상상된 과거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서 촉발된 측면도 있다. 만청(晚淸) 시기 중국에서는 청왕조를 이민족 지배자로 배척하면서 한족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만주족은 청국의 지배계층이었지만 시세의 급변과 한족 민족주의의 고조로 급격하게 몰락해가는 상황이었다. 만주족이 한족 민족주의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피식민자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대중교의 민족서사는 이처럼 동아시아 통치 질서에서 급속히 주변화되

20) 이명중(2014), 『근대한국인의 만주인식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p. 86.

21) 오구마 에이지(2003),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2) 만청-민국 초기에 중국의 민족 및 종족 담론들에 대한 일별로는 Julia C. Schneider (2017), *Nation and Ethnicity: Chinese Discourse on History, Historiography, and Nationalism (1900s-1920s)*, Leiden: Brill.

있던 두 종족들(만주인, 조선인)이 연대한 ‘네이션’을 상상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자원들을 전유하고 새로운 민족적 신화들을 창출해냈다. 대종교가 지닌 종교로서의 초국가적 확장성 뿐 아니라, 대종교 공동체 자체가 만주를 근거지 삼은 이주민들의 집단이었다는 점이야말로, 그들의 ‘민족’ 구상이 현실 국가들의 경계를 훌쩍 넘어 확장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그렇기에 대종교의 확장된 ‘민족’ 서사에서 갈등축은 종종 국가들 사이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 사이에 놓여 있었다. 박은식의 『몽배금태조』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오호라. 우리 조선족과 만주족(滿洲族)은 모두 다 단군대항조의 자손으로 오랜 옛날에는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기도 했고, 또 서로 통하기도 했는데 필경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리(分離)되면서 두만(豆滿)과 압록(鴨綠)을 경계로 이루어 양쪽의 인민(人民)이 왕래도 하지 못하고 각기 살은 지가 천여 년이 되었다. 이에 따라 풍속이 같지 않게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서로 남같이 생각하면서 다른 종족처럼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쇄국시대(鎖國時代)에 폐쇄된 정책으로 인하여 서로 넘나드는 것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 혹 월경(越境)하는 자 있으면 주륙을 행하였는데, 탐관은 이를 이용하여 인민(人民)의 재산을 약탈할 목적으로 잠상(潛商)이라, 또는 범월(犯越)이라는 죄명을 씌워 인민의 피를 두만, 압록강변에 뿌린 지 삼백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 우리 동포의 이주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서북간도(西北間島)와 해룡부(海龍府) 등지에 우리 동포의 촌락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장래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예언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개통(開通)의 영향을 관찰해 볼 때 실로 우연함이 아니다.²³⁾

23) 박은식(2002), 「몽배금태조」, 『백암 박은식 전집』 4권, 동방미디어, p. 171.

인용문에는 한편으로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 경계를 만들고 “범월(犯越)이라는 죄명을 씌워 인민의 피”를 뿌린 국가들을 향한 비판이,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국가들의 통치질서로 인해 단절된 인민들을 다시 하나로 융합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박은식은 ‘만주족’과 ‘조선족’을 ‘대항조단군’의 자손으로 자리매김하는 혈통적 민족을 가정하지만, 지난 몇 백 년 간 “인민이 왕래도 하지 못하고 각기 살”면서, 풍속도 언어도 통하지 않아 “서로 다른 종족”이나 다를 바 없다는 현실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한말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로 만주를 향해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면서, 박은식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조선족’과 ‘만주족’이 다시 한 번 통합적인 정체성/동일성을 형성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러한 변경의 상상력은 한, 중, 일의 주류적, 지배적 민족 상상들에 밀려나 금세 좌절되었지만, 일종의 잔여적 가능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안수길 「벼」와 『리튼보고서』의 겹쳐읽기로 보는 만보산 사건과 재만조선인 - 이민, 식민, 난민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간도협약’으로 만주의 영토 주권이 청국(중국)으로 귀속된 이후부터 일제의 만주국 수립까지의 시기 동안 재만조선인의 이주가 이민, 식민, 난민 등으로 상이하게 분절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 재만조선인의 복잡한 처지를 역사적 변동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방대한 과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평가나 해석들이 경합하고 있기에 일일이 변증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학계 쪽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²⁴⁾ 해석의 프레임을 둘러싼 논

24) 재만조선인의 국적 문제나 법적,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역사학계의 많은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손춘일(2000), 「만주국 성립후 토지상조권 문제와 재만한인에

쟁은 구체적 실증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여전히 ‘계류’(pending) 중이다. 만보산사건을 예로 들어 재만조선인을 ‘제국의 농군’(식민자)으로 평가했던 일련의 논쟁적 해석들은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쟁과도 맞물려 여전히 현재성을 띠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보산사건에 대한 안수길의 소설 「벼」와 『리턴보고서』의 재현/보고에 초점을 맞춰, 1930년대 초반 재만조선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살펴볼 것이다.

안수길은 10대 중반 만주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재만조선인 농민들의 삶을 핏진하게 그려냈던 대표적인 작가로, 1930년대 후반 ‘만주봄’에 힘입어 만주 개척 소설들을 양산했던 작가들에 비해 이주민족으로서의 재만조선인의 내재적 관점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삼은 「벼」²⁵⁾는 식민지 조선에서 각자 도생으로 만주에 건너왔던 이주민들의 삶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조약들, 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포획, 억압, 배제되는 양상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리턴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²⁶⁾는 만주사변 발발 후 국제연맹(League of

대한 토지정책: 1932-1937」, 『아시아문화』 13; 이동진(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임성모(2009), 「만주농업이민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29; 정지호(2008), 「민국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지위」, 『중국학보』 58; 조정우(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2014. 9; 채관식(2014), 「만주사변 전후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조선인 국적문제 제기와 민족인식의 논리」, 『한국 근현대사연구』 69.

25) 안수길의 「벼」는 『만선일보』에 연재(1941. 11. 16~12. 25)되었다가 작품집 『복원』(예문당, 1944)에 재수록 되었다. 이 글에서는 안수길(2011), 『안수길전집 1』, 글누림출판사를 참조했다.

26) 원문은 League of Nations (1932),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이 보고서는 곧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中央公論』에 게재되었다[國際聯盟支那調査委員會 編(1932), 『リットン報告書』, 中央公論社].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본[국제연맹(1986), 박영석 역, 『리턴보고서』, 탐구당]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영어 및 일본어본과 대조했다.

Nations)이 중일 분쟁 중재를 위해 파견한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인데, 만주의 역사와 정치적 갈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²⁷⁾ 그중에는 만보산사건과 재만조선인 문제에 관한 꽤 자세한 분석도 담겨 있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 재만조선인 문제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수길의 「벼」가 이주민족인 재만조선인의 ‘내재적’ 관점에 충실하다면, 『리튼보고서』는 한·중·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의 ‘겹쳐읽기’를 통해 재만조선인 문제를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간도는 형식상 청국의 주권적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국과 일본, 러시아 세력이 각축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변경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조선도 19세기 말(1885년, 1887년의 국경회담)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간도 일역(一域)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했는데, 백두산정계비 해석을 둘러싼 조청간(朝淸間)의 논쟁은 동아시아 질서가 조공체제에서 국민국가 체제로 이행하던 시기 ‘변경’을 ‘국경’으로 구획하기 위한 분쟁의 한 단면이었다.²⁸⁾ 주지하듯이 이 논쟁은 외교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1909)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만주(간도)는 공식적으로 중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간도 조선인의 이주는 비로소 ‘이민’이라는 근대적 형식을 띠게 되었다. 안수길의 『북간도』는 간도가 조선땅이라는 신념을 지녔던 이주 1세대 조선인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청국의 ‘이민자’로 규정된다는 것의 의미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27) 리튼보고서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고바야시 레이코(2011), 「만보산사건과 ‘리튼 보고서」, 『만주연구』 11; 전경선(2014), 「리튼조선단의 래만(來滿)과 만주국의 해외선전」, 『역사와 경계』 92.

28) 노영돈(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군사』; 김영미(2018), 「‘두만/토문’에 대한 지명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 32; 박성순(2014), 「한청간 간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동양학』 56 등.

일본은 두만강 이북의 간도, 그 영토와 조선 주민을 송두리째 청국에 넘겨주고 만 것이었다. 원한의 통감부 파출소는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을 걷어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원한의 씨를 심어 놓고 간 것이다. 그 뒤엔 무엇이 올 것인가? 이젠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영 입 밖에 낼 수 없게 되었다. 북간도의 조선 농민들은 완전히 남의 나라에 온 ‘이미그런트’ 유랑의 이주민이 되고 말았다.²⁹⁾

간도협약은 간도에서 ‘한민’(韓民)의 생활상 권리(거주권, 토지소유권, 자유왕래권, 미곡반출권 등)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완전히 남의 나라에 온 ‘이미그런트’”로 낙착됨으로써 더 이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병합되고 중일관계가 요동함에 따라 재만조선인의 권리 역시 불안정하게 변동할 수밖에 없었다. 발리바르의 통찰처럼, “배제는 국민 형태의 본질 자체”이기에, “같은 국민이나 외국인이나, 국민 공동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특정한 재화와 권리에 대해 불평등한(우선적인) 접근을 강제”³⁰⁾하기 때문이다. 재만조선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침해한 문제는 토지소유권이었다. 청국은 자국 국민에게만 토지소유권을 허용했기에 대부분의 재만조선인은 청국 지주(광둥) 밑에서 소작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조선인이 청국에 ‘입적’(귀화)할 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입적은 변발흑복이라는 청국 문화로의 강제적 동화를 전제로 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로 향하는 조선 이주민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09년 6월 시점에서 간도 거주 조선인들의 호수는 15,385호, 인구는 78,158명이었으며,³¹⁾ 리튼보고서가 쓰였던 1931

29) 안수길(2011), 『안수길전집 5: 북간도』, 글누림출판사, p. 263.

30) 에티엔느 발리바르(2010),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p. 59.

31) 『매일신보』, 1912. 1. 10.

년 무렵에는 재만조선인 수가 80만에 이르렀다고 산정되었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일차적으로 이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기민’(飢民, 棄民)으로 방치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주에서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치원은 일행을 끔찍이 환영하였다 … (중략) … 수전 개간을 그렇게 후한 조건으로 승낙한 것도 그가 조선 있을 때 입쌀밥에 맛들인 관계도 있거니와 그것이 만주에서도 한전(旱田)보다 이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안 까닭이다. … 당시의 정부에서도 대체로 방치원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만주에서 더욱 수전의 개간은 자원의 발굴로서 국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벼」, pp. 176-177).

그들(조선인, 인용자)은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다고 해서 중국인의 환영을 받았고, 또한 일제의 압박에 대한 동정으로 호감을 얻기도 했다. 만약 일본이 조선인의 중국 국적 취득을 거부하지 않고, 또한 보호를 해준다는 구실 하에 그들을 만주 내로 추적하지 않았던들, 조선인의 만주 식민이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리튼보고서」, p. 122).

「벼」에서 만주인 지주 방치원이 조선인 이주자들을 “끔찍이 환영”한 것 역시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주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대국으로서의 금도라 자임”(p. 177)하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수전 개간이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투자요, “국력의 증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리튼보고서」에도 조선인들이 “처음에는 경제적 쓸모”로 “중국인의 환영”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벼」에는 만주의 토착민들이 갖 이주한 조선인들을 박해한 사건이 나오지만, 작가는 이를 양 민족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원초적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포착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 조선인이 자신들의 “경작지를 침해”(p. 191)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만, 조선인이 성공적으로 수전을 풀어도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깨닫자 조선인의 농악마당에 함께 나와 어울릴 정도로 양측의 관계가 호전되었다.³²⁾

만약 만주의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노동 ‘이민’, 그중에서도 여러 법적 제약에 의해 이민자의 계층 상승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열악한 노동 이민의 한 양상쯤에 머물렀을 것이다.

조선인 중에는 간도 이외의 만주 각처에 실제로 소유권 또는 조차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인 지주와의 수확 분배 기준에 따른 조차계약에 의하여 단순한 소작인으로 벼농사에 종사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계약은 대체로 1년에서 3년 기한으로 제한되고, 그 갱신도 지주의 임의에 맡겨지는 것이 보통이었다(『리튼보고서』, pp. 123-124).

그 동안 무상으로 개간하고 지어먹은 논은 그대로 방치원에게 바치었다. 이것이 조금 섭섭하였으나 그때에는 논이며 얼마간의 밀천을 쥘 때였다. 그뿐 아니라 또 삼 년간 사륙제(지주4, 작인 6)로 소작할 것을 계약하였다. 그 위에 주민들은 황무지를 샀다. … 그리고 고향에 편지 내어 자꾸자꾸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삼년이 지났다. 계약은 또 연장되었다. 이번에는 육년 간 절반으로 하였다(「벼」, p. 194).

32) “농악이 시작되었다. 원주민들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다 구경나왔다. 원주민들도 그들의 경작지를 침해하지 않고 몹쓸 땅을 갈아 가득히 나락이 매어지도록 되게 한 이주민 솜씨에 몰래 감탄하며 농악을 잡히며 노는 모양이 힘차고 재미있다고 구경하였다.” 「벼」, p. 191.

『리튼보고서』에 따르면 1931년 시점에도 대부분의 재만조선인은 중국인 지주에게 고용된 “단순한 소작인”에 불과했으며, 그 계약조차 “지주의 임의에 맡겨”진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형태였다. 「벼」에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인 지주 방치원은 조선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조선인 농민들이 그와 맺은 계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빈손으로 만주에 도착한 조선의 궁민들은 방치원에게 초기 정착비와 황무지를 빌리는 대신 그 땅을 3년간 수전으로 개간하여 빛을 갠고 수전도 고스란히 방치원에게 바쳐야 했다. 그 이후 다시 3년간 소작 계약을 할 때는 소출을 4(지주) 대 6(소작인)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5 대 5로 나누는 식으로, 계약조건은 소작인들에게 점점 불리해졌다. 「벼」가 그려내는 초기 이주자들은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돈을 모아 황무지를 사들일 수 있었지만 (물론 중국 입적을 전제로), 만주로 이주한 시기가 늦을수록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서해의 「홍염」이나 강경애의 「소금」 등이 그리고 있듯, 중국인 팡둥(지주) 밑에서 훨씬 가혹한 착취를 당하여 기아를 면치 못하는 재만조선인들도 많았다.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 광수조차 자기 자본을 갖지 못한 만주의 소작노동자가 어떻게 점점 빛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가를 소상하게 썼을 정도로, 재만조선인 농민의 궁핍은 일반적인 추세였다.³³⁾ 요컨대, 재만조선인들은 대부분 ‘죽게 내버려진’ 식민지의 기민(棄民)으로서 만주에 떠밀려갔으며, 그곳에서도 지주 자본에 일방적으로 예속된 이주노동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33) “벼금은 좀 올랐으나, 겨우 한 섬에 칠 원이니, 이것을 다 판대야 백 원 내외에 지나지 못한다. 그런데 빛으로 보면 김문제에게 줄 것이, 금 백 원이라는 작년에 표 써놓은 조, 금 백 원이라는 금년도 삭을 도지 조, 금 사십 원이라는 작년 조 백 원의 길미, 금 육십 원이라는 김문제에 농량 값, 금 사십육 원이라는 집주인 호떡이라는 만인에게 줄 조. 이상 합계 삼백삼십육 원이니, 금년에 지은 것을 다 팔아 주고도 이백삼사십 원 빛이 남을뿐더러, 양식 한 알 의복 값 용돈 한 푼 남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광수(2013), 『삼봉이네 집』(전자책), 신울, p. 106.

그러나 만주의 특수한 상황은 재만조선인의 처지를 단순한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복잡 미묘한 것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팽창 야욕과 중국의 통치 문란이 맞물려 만주에 중국의 배타적 주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서, 재만조선인은 양쪽의 주권 주장이 충돌하는 틈에 끼어 분쟁의 촉발자이자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리튼보고서』가 전하듯, 중국인들은 일본이 조선인을 앞세워 만주 일대를 식민화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반면 일본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대해 특히 장려하거나 제한한 바 없으며, 이는 자연적 추세로서, 정치적 내지 외교적 동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되어야”(『리튼보고서』, p. 122)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매일신보』의 만주 담론은 1910년대 중반부터 일제가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1930년대 이전까지는 총독부가 직접 지원하는 조선인의 집단 이주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담론상으로는 1차대전을 전후하여 확연한 어조 변화가 감지된다. 1차대전 이전에는 만주를 ‘사지(死地)나 ‘생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만류하던 기사들³⁴⁾이 많았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로는 만주가 “조선민족의 발원지”요 “장래의 발전을 기하는 책원지”³⁵⁾라거나 만주의 “옥토는 조선인의 이주를 대(待)하여 개척될 터이니 조선인의 낙토(樂土)”³⁶⁾라는 식의 미사여구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일제의 선전에 호응하여 만주가 장차 “아선인(我鮮人)의 식민지”³⁷⁾가 될 것을 기대하거나 만주를 ‘조선의 식민지’³⁸⁾로 삼자는 조선인 식자들의 목소리도 발화되었다.

34) 「간도는 死地, 咸安郡(경남)」, 『매일신보』, 1913. 5. 9; 「간도는 지옥, 서간도」, 1913. 5. 11; 「간도는 차생지옥」, 『매일신보』, 1913. 8. 14 등.

35) 「送만주시찰단」, 『매일신보』, 1917. 4. 15

36) 北遊生, 「만주와 이주호 조선인」, 『반도시론』 2권 11호, 1918. 11, p. 53.

37) 金亨復(錦堂), 「余의 北進論」, 『반도시론』 1권 5호, 1917, p. 49.

38) 嵩陽山人, 「조선의 植民地」, 『매일신보』, 1918. 4. 2.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른바 ‘만주식민론’은 대부분의 조선인 이주자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선전문구와 피식민자 내지 이산자(離散者)의 현실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대 식민지란 “자원 조달, 시장 확보,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일회적 침략이나 약탈이 아닌, 식민모국과의 지속적인 통치 관계 아래 농민”³⁹⁾ 영토라는 규정을 엄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만주국 수립 이전까지 대부분의 재만조선인은 자본을 결여한 이주노동자의 처지에 머물러 있었고, 일본 영사관이 자리 잡은 간도 일역을 제외하고는 식민본국(일본)의 통치역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벗어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동일하게 ‘식민’(植民)으로 명명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단지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⁴⁰⁾

그(소현장, 인용자)의 지론으로 한다면 조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령스관”(領事館)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조선 사람을 민국에 입적시키고 중국 옷 입기를 강조하여 자기나라 백성으로 취급해버리나 소현장의 지론은 그런 미지근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중국복을 입으나 국

39) 일본총독부의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조선통치를 자본의 필요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경제사적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지만, 일단 국가의 ‘재정’과 시장의 ‘자본’이 서로 다른 층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근대 식민주의의 ‘자본’과 ‘국가’라는 상이한 심급들의 특수한 ‘절합’(articulation) 양태로 설명하는 것은 식민주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40) 일본 식민정책학의 주요 인물인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植民’을 국가, 주권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사회집단의 이주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주나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사회적 현상 면에서 동일한 ‘植民’이라고 간주된다. 야나이하라가 ‘식민’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좀더 고찰해볼 문제이지만, 일단 본고의 ‘식민’ 정의(2장)는 그와 다름을 확인해두자. 矢内原忠雄(1937), 植民及植民政策, 東京: 有斐閣, pp. 1-14.

적에 드나 조선 놈은 어디까지든지 조선 놈이고 조선 놈인 이상 일본 신민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장함으로 당연한 일로서 여기에 비로소 영사관 설치가 문제되며 영사관이 설치된다는 것은 곧 일본의 정치세력이 이 나라에 인을 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 (중략) … 그 문제의 백성인 조선 사람을 전연 입국시키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순한 수단으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제수단을 써서 몰아냄으로 화근을 빼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었다(「벼」, p. 210).⁴¹⁾

조선인의 이중 국적 문제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만주의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조선인이 귀화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임시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장차 농토 획득을 위한 일본 정책의 앞잡이가 될 것을 두려워하게 했다(『리튼보고서』, p. 127).

그렇다면 중국에서 한때 값싼 노동력으로 환영받고 일본의 ‘피압박민족’으로 동정받기도 했던 조선인이 중국인들에게 새삼 위협으로 여겨지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리튼보고서』는 그 이유가 ‘조선인의 이중 국적 문제’에 있음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조선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중국 국적으로 입적한 조선인들조차 일본 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일본의 법제야말로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이다.⁴²⁾ 그 결과 중일

41) 안수길(2011), 「벼」, 『안수길전집 1』, 글누림출판사, p. 210.

42) “1924년의 개정 국제법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 이 일반적 법률을 조선에 적용할 칙령이 공포되지 않았다.” 『리튼보고서』, p. 1, p. 127. 식민지의 ‘법령통치’는 ‘법’을 증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피식민자를 광범위한 ‘예외상태’에 묶어두는 식민지적 통치성(colonial governmentality)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기존의 ‘억압과 수탈론’(강제와 무력에 근거한 식민통치) 대 ‘식민지 근대화’(법적 합리성에 근거한 식민통치)론의 이분법을 넘기 위해서는 식민지적 통치성의 고유한 작동방식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가 악화될수록 그 사이에 끼인 ‘조선인이자 중국인이자 일본인’은 일본의 만주 식민화에 유용한 구실이자, 중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때 조선인의 변발흑복과 입적귀화를 강요하기도 했던 중국은 재만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점점 조선인을 구축(驅逐)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갔다. 특히 1928년 만주 군벌인 장쉐량이 국민당 정부와 항일 통일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국민주의 정책이 만주에까지 파급되었다. 「벼」에서 새로 부임한 소현장은 중국 국민주의에 투철한 인물로서, 조선인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관행을 깨고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시하여 자국 영토에서 쫓아내고자 한다. 소현장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통치 권력은 매봉둔 사람들이 애써 지은 학교를 폐쇄하도록 명령하고, 조선인 현장을 잡아 “반 주검이 되”도록 처벌하고, 군대를 시켜 학교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마침내 “내일 안으로 모두 매봉둔을 떠나 조선으로”(pp. 213-214) 돌아가라고 다짜고짜 통고한다. 이와 비슷한 중국 관헌의 ‘법적 폭력’이 비밀비재했음은 당시의 신문 매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심지어 『리튼보고서』에 실린 중국 측 진술도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법적 폭력’은 일본의 침략 위협에 대한 정당 방어요, “(중국) 동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고유의 권리”(『리튼보고서』, p. 135) 행사로 주장된다.

리튼조사단은 중국측 주장을 일정 정도 수궁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조선인의 애처로운 상태”에 “특별한 관심”(p. 133)을 표명한다. 이런 관심은 위원회가 만주 체재 중 만났던 조선인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만주 체재 중 조선인 단체의 진정위원(陳情委員)이라 자칭하는 많은 대표자를 만났”(p. 133)다. 이들은 대개 일본의 ‘협력’자들이겠지만 어쨌든 먼 이방에서 온 리튼조사단에게 재만조선인의 복잡한 처지와 곤궁을 이해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밖에도 위원회 앞으로 도착한 ‘수 천 통의 편지’ 가운데는 좀 더

배일적인 조선인들의 입장도 섞여있었을 것이다. 이런 증언과 진술들을 토대로 리튼조사단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재만조선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만보산사건이 단지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원초적인 ‘민족감정’이나 문화 충돌로 야기된 것도 아니고,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재만조선인의 ‘제국의식’이나 ‘식민자’ 행세 때문도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관련됨을 이해한 것이다. 그 구조적 메커니즘이란 일본 제국의 일방적인 법의 부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80만 조선인이 만주에 있다는 사실”이 “중·일간의 정책 충돌을 첨예화”시키고, “그 결과 조선인 자신이 희생자가 되어 재난과 참화를 입게”(『리튼보고서』, p. 120)되는 모순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만보산사건’ 역시 중일 간에 맺어진 조약들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겹겹의 모순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지위와 권리는 주로 중일간의 다음 3개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1909년 9월 4일의 간도협약, 1915년 5월 15일의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 및 교환 각서, 그리고 1925년 7월 8일의 이른바 <미쓰야(三矢)협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의 경우에 일어나는 이중 국적에 대한 미묘한 문제에 관해서는 중일간에 아무런 협정이 없다(『리튼보고서』, p. 121).

중국측은 1909년 9월 4일의 간도 협약에 의해 조선인의 거주 및 차지(借地)의 특권은 간도 지방 이외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만보산의 분류는 조선인이 거주 권리가 없는 땅에 거주한 사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리튼보고서』, p. 139).

한편 일본측은 조선인의 거주 및 차지 특권은 간도 협약 조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남만주 전역에서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여된 거주 및 조차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인은 만보산에서 거주 및 조차할 수 있는 조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주장에 의하면 조선인의 지위는 일본 국민의 지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리튼보고서』, p. 140).

『리튼보고서』가 파악한 바대로 재만조선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관련된 중일간의 주요 협정은 <간도협약>(1909), <남만동몽조약>(1915), <미쓰야협정>(1925)의 세 가지였다. 전술했듯 재만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즉 중국으로 입적해도 여전히 일본국민으로 남게 되는 문제는 중일 간에 “아무런 협정이 없”어 분쟁을 양산해왔고, 결과적으로 재만조선인 자신이 ‘재난과 참화’를 입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었다. 한편 <간도협약>과 <남만동몽조약>의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양쪽 해석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중국 측은 조선인 문제에 관한 한 <간도협약>이 유일한 규정이며, 따라서 만보산사건은 조선인이 ‘거주권’조차 갖지 못한 곳에서 경작을 시도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조선인’도 ‘일본국민’이기에 <남만동몽조약>에 따라 남만주 전역에서 일본 국민에게 부여된 ‘거주권’과 ‘조차권’을 조선인도 동일하게 갖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국민에게 보장된 치외법권에 따라 ‘일본국민 = 조선인’의 ‘보호’를 위한 일본영사관과 치안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오로지 ‘대외적’으로만 ‘일본국민’일 뿐, ‘대내적’으로는 ‘일본국민’에 상응하는 권리들을 갖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조선인=일본국민 보호’론이 한낱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은 <미쓰야협정>에서 잘 드러난다. 항일세력 등의 ‘불령조선인’ 취체에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도록 규정한 <미쓰야협정>은 중일의 국가 간 대립과는 별개로 지역적 수준에서 중국 관헌이 앞장서서 배일조선인을 검거하여 일본에 넘기도록 만든 강력한 수단이었다. 『리튼보고서』의 중국 측 진술조차 중국 관헌의 조선인 탄압은 <미쓰야협정>에 근거하여 “주로 일본의 이익 때문에 취해진 것”(p. 135)이었음을 주장할 정도였다.

재만조선인의 지위는, 그들 개개인의 욕망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 이념과 사상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조건 속에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기능될 수 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법적, 제도적 네트워크야말로 삶의 질곡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바로 그 법적, 제도적 네트워크로 인해 재만조선인은 중일간의 조약과 법에 근거한 ‘법적 폭력’(중일의 관헌, 경찰, 군대에 의한 ‘합법적’ 검거, 수탈, 학살), 조약과 법의 해석 충돌이나 공백을 틈탄 ‘비법적 폭력’(재만조선인에 대한 법의 자의적 운용과 중지), 국가들의 보호 밖에 방치됨으로 인한 ‘불법적 폭력’(마적, 비적, 적대적인 토착민 등의 습격과 폭력 행사) 등 온갖 종류의 폭력에 취약하게 노출되었다. 나아가 법과 제도들은 재만조선인의 권리들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박탈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들은 마침내 최소한의 권리인 ‘거주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자들, ‘세계 안의 자리’를 갖지 못한 ‘난민’으로 전락해갔다.

(중국의 현 공서에서는, 인용자) ... 다짜고짜로 내일 안으로 모두 매봉둔을 떠나 조선으로 도로 나가라는 것을 통고하였다. 이 명령을 어기면 흥덕호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매봉둔 사람 모두가 결단날 줄 알라, 두세 번 말하고 내일 안으로 매봉둔을 떠난다는 문서에 흥덕호가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도장을 찍게 하였다 ... (중략) ... 그러나 갈 곳이 어디냐? ... 죽어도 예서 죽고 살아도 예서 살 밖에 없는 그들이었다. 고향에는 도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벼」, pp. 213-214).

나까모도는 그것은 결국 중국 정권의 배일정책으로 나오는 것이라 말하며 내일 길림에 갈 일이 있으니 영사관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겠노라 말하였으며 어떻게 하든지 처음 뜻을 굽히지 말고 학교는 문을 열도록 하라 격려하였다 ... (중략) ... 나까모도한테 갔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오고야 말 것이다. 흥은 하늘을 향하여 놓은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벼」, p. 220).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보산사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이나 경작권은 물론이요, 거주권조차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미 수십 년간 만주 전역에 폭넓게 흩어져 살고 있던 재만조선인의 현실과는 괴리가 컸다. 배일 경향이 강할수록 일본 치외법권지인 간도를 멀리 벗어나 살아왔던 재만조선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 아이러니한 조치이기도 했다. 「벼」가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중국 공권력에 의한 조선인 구축은 만주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재만조선인들은 조선에서 살 수 없어 떠나온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조선으로 도로 나가라’는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은 조선인을 볼모로 중일분쟁을 일으키고, 그 틈바구니에 낀 조선인을 죽음의 기로로 내몰고, 이제는 벼랑 끝에 선 조선인의 구원자를 자처했다. 만보산의 조선인들이 일본 영사관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고, 매봉둔의 조선인들이 ‘나까모도’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다.

5. 결론

리튼조사단이 만주에 도착한 것은 이미 만주국이 설립된 후였다.⁴³⁾ 애초에 국제연맹의 중재를 요청했던 중국은 만주국 설립의 부당성과 만주의 중국 영토로의 복귀를 주장했지만, 사태는 쉽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되어 있었다. 리튼조사단은 짧은 시간에 만주의 복잡한 역사·정치

43) 『리튼보고서』 영어 원문의 부록에는 1932년 2월 29일에 요코하마를 출발할 때부터 동년 9월 4일 베이징에 머물 때까지의 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Appendix: Itinerary in the Far East of the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1932, pp. 140-148. 만주국은 1932년 3월 1일 건국이 선포되었고 위원회에 만주국 설립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적 행사들을 벌였다.

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리튼보고서』가 내놓은 ‘해결책’은 그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위원회 제안의 기본 골자는 만주국의 정치질서를 현상대로 유지하되, 일본, 중국, 소련 및 기타 서양 열강들이 만주에서의 경제적 제후를 촉진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런 ‘소박한’ 제안은 애초에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정치적 권한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위원회의 해결책은 국제정치적 복잡한 쟁점들을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현상유지 안에서의 국가 간 제후였던 셈이다. 국제연맹이라는 기구 자체가 열강들의 경제적 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점은 위원회의 관점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였다.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이나 ‘자본’ 보호를 위한 치외법권과 군사적 개입은, 신중하게 적용되도록 권고될 뿐, 근본적으로 부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법 질서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논리에 부응해가며 만주국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은 만주국 설립이 인민들 자신의 ‘자치’와 ‘자결’의 열망에 따른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이 국제연맹 규약 10조 ‘영토의 보전’(territorial integrity)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 규약은 원래 국제연맹 수립 후 각국의 영토적 경계를 현상대로 보존함으로써 더 이상의 국제분쟁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월슨은 전 세계 소수민족들과 피식민자들의 ‘자결’과 ‘독립’의 열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영토의 보전’ 원칙이 한 영토 내에서 인민의 혁명을 통한 정체(政體) 변화를 부정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아님을 부언한 바 있다.⁴⁴⁾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동 3성에서 중

44) “An Address in Reno”, *The Papers of Woodrow Wilson*, 63, 22 Sep. 1919, pp. 432-433. 국제연맹 규약 10조에 대한 월슨의 언급에 관한 분석은 윤영실(2019), 「우드루우 월슨의 self-determination과 nation 개념 재고 — 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둘러싼 한미일의 해석갈등과 보편사적 의미(1)」, 『인문과학』 115 참조.

국의 구(舊) 정권 대신에 들어선 새 정권(만주국, 인용자)은 그 성립이 지방 인민의 행위이며, 그들은 자발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의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정당”(『리튼보고서』, p. 284) 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차대전 후 월슨의 논리를 전유하여 주장되었던 피억압민족의 ‘자결’의 권리가 이렇게 만주국의 건국 논리로 ‘재전유’된 것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리튼 조사위원회가 소수민족의 권리에 완전히 무심했던 것은 아니다. 『리튼보고서』는 “백계 러시아인과 기타 소수 민족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또한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p. 300)음을 짧게 언급했다. 국제연맹 설립 당시 중동부 유럽 신생국가들의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 제정했던 ‘Minority Treaties’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위원회는 중일분쟁의 구조적 요인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재만조선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쟁점은 일본인에게 허용되는 치외법권과 거주권의 범위, 그리고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권리들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간도와 남만주에서의) 현행 거주권을 보장하고 북만주와 열하까지 이들의 거주권을 확대하되, 이들 지역에서 내지일본인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중일 간 협정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었다(p. 304). 위원회의 권고는 아무런 법적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재만조선인의 난민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재만조선인을 여전히 일본 국적에 속박하고 ‘보호’를 자처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일본을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⁴⁵⁾

45) “조선인과 같이 그 수가 많고 현재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또한 중국 주민과 그토록 밀접한 관계 아래 거주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외국에 의한 보호를 계속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감정 충돌을 빈발시키고, 나아가서 지방적 사건의 발생과 외국의 간섭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알력의 원천이 제거된다는 것은 평화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리튼보고서』, p. 305.

이 글에서는 ‘세계 안의 자리’로 상징되는 삶의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들의 경계를 넘는 이주자들의 삶이 국민국가들의 질서 속에서 포획되고 분절됨으로써, 이민, 식민, 난민 등의 다양한 지위로 변동했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안수길의 소설과 『리튼보고서』는 각기 재만조선인의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조건을 재현/보고하면서, 만보산사건 당시 재만조선인의 지위가 일반적인 이주노동자(이민)나 식민자본(식민)이 아닌, 최소한의 거주권조차 위태로운 ‘난민’에 가까웠음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재만조선인의 난민화를 야기한 주된 요인인 동시에 이들의 ‘보호’를 자처하는 유일한 국가 권력이라는 역설 속에서, 재만조선인들의 ‘자치’와 ‘안전’에 대한 열망은 만주국 수립의 논리로 흡수되고 재전유되었다. 역사의 이 아이러니한 과정을 재만조선인의 이데올로기(제국 의식)나 도덕(친일 내지 협력)의 층위에서가 아니라, 국민국가들의 질서 속에서 이주민족이 처한 정치적 아포리아들로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현재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자 료】

- 국제연맹(1986), 박영석 역, 『리턴보고서』, 서울: 탐구당.
- 김형중·배우성 외 역(2012),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권』, 서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 박은식(2002), 「몽배금태조」, 『백암 박은식 전집』 4권, 서울: 동방미디어.
- 안수길(2011), 『안수길전집』 1권·5권, 서울: 글누림출판사.
- 國際聯盟支那調査委員會 編(1932), 『リットン報告書』, 東京: 中央公論社.
- League of Nations (1932),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 No.:C.663.M.320,VII.Political), Geneva: League of Nations.
- 『매일신보』, 『반도시론』, 『신한민보』, 『동아일보』 등.

【논 저】

- 고바야시 레이코(2011), 「만보산 사건과 『리턴보고서』 — 재만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1.
- 김 피오토르 게르노비치·방상현 공저(1993), 『재소한인이민사 — 스탈린의 강제이주』, 서울: 탐구당.
- 김기훈(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정책 연구 시론: 일본인 이미 장려, 조선인 이미 통제 정책 형성의 배경」, 『아세아문화』 18.
- 김기훈(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1.
- 김영미(2018), 「‘두만/토문’에 대한 지명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 32.
- 김재용 외(2014),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소명출판.
- 김재용(2011),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 12.
- 김철(2002),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
- 꾸웨이쥔(顧維鈞)(2017), 박선영 역, 『중일문제의 진상: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 동북아시아재단.

- 노영돈(2018), 「간도 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군사』 108.
- 도면희(2015), 「독립운동 계열의 한국사 구성체계 — 대중교계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사림』 53.
- 박결순(2012), 「일제 강점기 망명 인사의 고구려·발해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 박성순(2014), 「한청간 간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동양학』 56.
- 서은주(2010),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 현경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
- 손춘일(2000), 「만주국 성립후 토지상조권 문제와 재만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1932-1937」, 『아시아문화』 13.
- 송명희(2010), 「암흑기 재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3.
- 에티엔 발리바르(2010),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 오구마 에이지(2003),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 윤영실(2019), 「우드로우 윌슨의 self-determination과 nation 개념 재고 — 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둘러싼 한미일의 해석갈등과 보편사적 의미(1)」, 『인문과학』 115.
- _____ (2019), 「헨리 휘튼과 J.C.블룬칠리의 네이션 개념과 마틴의 번역서 『만국공법』 『공법회통』 — 국제법과 식민주의적 폭력, 네이션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9.
- _____ (2017), 「이주민족의 상상력과 최남선의 『송막연운록』」, 『만주연구』 23.
- _____ (2017), 「자치와 난민 — 일제 시기 만주기행문을 통해 본 재만조선인 농민」, 『한국문화』 78.
- 이경훈(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
- 이동진(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 이명중(2014), 『근대한국인의 만주인식 연구』, 한양대 사학과 박사논문.
- 이선미(2005), 「만주 체험과 만주 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 15.
- 이성환(2009), 「간도의 정치적 특수성과 일본의 간도분리론」, 『일본문화연구』 32.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2009), 『범월(犯越)과 이산(離散)』, 인하대학교출판부.
- 임성모 외(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 임성모(2009), 「만주농업이민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29.
- 전경선(2014), 「리튼조선단의 래만(來滿)과 만주국의 대외선전」, 『역사와 경계』 92.
- 정중현(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 정지호(2008), 「민국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지위」, 『중국학보』 58.
- 조정우(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 채관식(2014), 「만주사변 전후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조선인 국적문제 제기와 민족인식의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69.
- 하재연(2008), 「‘신체제’ 성립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25.
- 한나 아렌트(2006),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 한석정 외(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한수영(2003), 「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의 문제」, 『상허학보』 11.
- 한영우(1994), 「1910년대 이상룡, 김교현의 민족주의 역사서술」, 『한국민족주의 역사학』, 일조각.
- 한홍화(2012), 「작가의 공간의식과 만주의 의미 — 이태준의 「농군」과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
- 황호덕(2011), 『벌레와 제국』, 새물결.
- 金斑実(2013), 「間島朝鮮人が求めていた教育は何であったか-金躍淵と日高丙子郎の教育活動の比較を通して」, 『韓国言語文化研究』 20.
- 駒込武(2018), 「植民地主義」, 『日本植民地研究の論點』(日本植民地研究會編), 東京:岩波書店.
- 佐々充昭(2004), 「1920年代「滿州」における「大高麗國」建国構想--朝鮮新宗教と日本興亜主義者との邂逅」, 『國際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94.
- 新渡戸稻造(1943),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論文集(矢内原忠雄 編), 東京: 岩波書店.
- 矢内原忠雄(1937), 植民及植民政策, 東京:有斐閣.
- Arendt, H. (1976),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N.Y.: A Harvest Book.

- Chibber, V. (2013), *Postcolonial Theory and the Specter of Capital*, London: Verso.
- Hussain, N. (2003), *The Jurisprudence of Emergency: Colonialism and the Rule of Law*,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sby, A. (2012), *The Right to Have Rights*, N.Y.:Oxford Univ. Press.
- Schneider, J. C. (2017), *Nation and Ethnicity: Chinese Discourse on History, Historiography, and Nationalism (1900s-1920s)*, Leiden: Brill.
- Svirsky, M. and S. Bignall (2012), *Agamben and Colonialism*,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Immigrant, Colonizer or Refugee:

Colonial Korean Farmers in Manchuria and Their ‘Place in the World’

Youn, Young-shil*

This paper examines Korean refugees in Manchuria during the inter-war period and the implication of their existence in relation to the global history of the time. Hannah Arendt paid attention to the oppression and denationalization of racial minorities and stateless peoples in the inter-war European countries and analyzed the phenomenon as the collapse of the nation-state system. During the same period, millions of colonial Koreans in Manchuria were also becoming refugees, dispossessed of their rights of culture, cultivation and residence. Avoiding national narrative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aking the transnational and immanent perspective of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conflicts between the transnational subaltern who desperately sought for their ‘place in the world’ with cross-border migration and the sovereign states which mobilized, regulated or dispossessed the migrant population with biopolitical security mechanisms of its own. Even though Korean refugees’ pursuit for safety led them to temporaril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har-

* Assistant Professor, The Institute for Korean Christianity Culture, Soongsil University

mony policy of Manchuquo, their fundamental orientation as migrants was political autonomy, cultural self-representation and peaceful cohabitation with different ethnic nations. Examination of Korean migrants in Manchuria can pave a way for new imagination of diasporic nations ('dis-semi-nations'), which cannot be reduced to any state-nation nor the colonial nationalism of Korea.

